
e 스포츠 프로 선수 계약서
(리그 오브 레전드)

회 사 명 _____
팀 명 _____
선 수 명 _____
계약체결일 _____

제1조 [계약당사자]

[redacted](이하 ‘회사’)과(와) [redacted](이하 ‘선수’)은(는)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아래와 같이 [redacted](이하 ‘본 게임’) 프로 선수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본 게임의 선수로서 회사를 위해 선수활동을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선수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정의]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① ‘선수’ 란 회사와 본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회사가 지시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하여 본인의 특수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자를 말한다.
- ② ‘회사’ 란 선수와 본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법인으로서는, 선수가 지시에 따라 각종 활동에 참가하여 본인의 특수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대가로 이에 대한 후원금을 지급하는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회사가 본 게임과 관련한 활동을 계속적·체계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본 게임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여 만든 조직을 ‘팀’ 이라 한다.
- ③ ‘종목사’ 란 본 게임을 제작·개발·판매·유통하는 회사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본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리그를 개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하며 그 모회사, 자회사 및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 ④ ‘본 게임 규약’ 이란 본 게임의 종목사가 본 게임과 관련하여 제정한 제반 정책, 규칙 및 원활하고 공정한 ‘리그’ 운영을 위하여 종목사가 제정 및/또는 승인한 ‘리그’ 운영 규정을 포함한다.
- ⑤ ‘리그’ 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게임과 관련하여 종목사 또는 종목사가 승인하는 제 3자가 진행하는 대회 및 경기를 말한다.
- ⑥ ‘대회참가활동’ 이란 본 게임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리그 및 기타 대회와 경기에 선수로서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⑦ ‘훈련활동’ 이란 대회참가활동을 위하여 선수가 회사의 지시 혹은 회사가 안내하는 일정에 참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⑧ ‘부대활동’이란 대회참가활동 및 훈련활동을 제외하고, 회사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대외활동을 말하며, 팬미팅, 사인회, 인터뷰, 광고 촬영, 기자간담회, 사회봉사, 콘텐츠 제작, 프로모션 활동, 공익협찬 활동, 마케팅 활동, 대중매체 출연 등 각종 행사를 포함한다.
- ⑨ ‘초상권’이란, 선수가 자신의 초상(얼굴 및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선수의 이름, 사진, 서명, 게임용 ID, 별명, 초상, 영상, 캐릭터, 동영상물 등 이에 준하는 것들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다.
- ⑩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을 말한다.
- ⑪ ‘상표표현권’이란 선수의 착용 의류에 대하여 회사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회사 또는 후원사의 상표, 상호, 로고 등을 부착하여 노출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⑫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된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제4조 [준수사항]

회사와 선수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본 게임 규약;
- ② 회사 및 선수가 각각 리그 참가 및 종목사가 진행하는 각종 대회 및 이벤트 등에 참가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및
- ③ 한국 e 스포츠협회의 제반 규정, 본 게임으로 진행되는 리그 운영에 관한 한국 e 스포츠협회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별지]에서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단, 본 게임 규약에서 최대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본 계약 체결 시 본 게임 규약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대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후원금]

- ① 회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별지]에서 합의한 후원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선수는 세부 계약기간별 지급액, 옵션, 인센티브, 후원사 협찬요건 준수 등 후원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

지]에서 자유롭게 정하되, 회사는 매월 선수에게 후원금을 [별지]에서 정한 지급일에 균등·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후원금의 지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선수가 부담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를 원천징수 또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월의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회사는 그 직전 영업일에 후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대회참가활동]

선수는 본 계약기간 동안 회사가 지정하는 국내/외 각종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신변·건강상의 이유로 물리적으로 대회를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수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선수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제8조 [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의 배분]

선수가 속한 팀이 대회에 참여하여 회사 또는 팀이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팀에게 해당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상금의 분배 비율에 대해 [별지]에서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선수에게 지급한다.

제9조 [훈련활동]

선수는 본 계약기간 동안 회사가 지시하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훈련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선수는 훈련에 관한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신변·건강상의 이유로 물리적으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수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선수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 [부대활동]

선수는 본 계약기간 동안 회사가 지시하는 부대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부대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수와 협의하여 회사가 정하되 선수는 부대활동에 관한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다만 신변·건강상의 이유로 물리적으로 부대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수는 회사가 지시하는 부대활동의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대활동의 경우, 회사와 선수는 부대활동으로 인하여 얻게 될 수익의 분배에 관하

여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제11조 [후원금의 감액]

제 7 조, 제 9 조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한국 e 스포츠협회 혹은 종목사의 제재, 본 계약에 의한 대회참가활동 및 훈련활동에 직접 기인되지 않은 질병 및 부상, 또는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로 대회참가활동 또는 훈련활동을 정지하거나 불참할 경우 회사는 활동정지/불참 1 일당 본 계약상 후원금의 365 분의 1 씩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활동을 정지하거나 불참하는 경우 연중 30 일을 초과하는 기간부터 본문과 같이 후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 [전자장비]

선수의 참가활동 및 훈련활동에 필요한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선 거치대, 마우스패드 및 훈련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전자장비들은 회사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팀 내부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비용의 부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수가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또는 부대활동을 하는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팀 내부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부담한다. 만약 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선수가 부담한 경우 회사는 비용이 발생한 날의 그 다음 후원금 지급일까지 선수가 부담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14조 [치료비]

선수가 본 계약에 의거한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또는 부대활동 도중 직접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회사는 치료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선수는 회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 혹은 의료 방법을 통해 선수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치료 비용은 선수가 부담한다.

제15조 [선수의 건강 및 권익 보호]

- ① 회사는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선수가 건강 검진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선수의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선수가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선수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선수가 가져야 할 전문성, 윤리성 등의 소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가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선수는 해당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 [훈련태만]

선수가 대회참가활동 또는 훈련활동에 있어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거나 경기에 참가할 만한 몸 상태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훈련일정 및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제17조 [선수의 의무 및 징계 등]

- ① 선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팀 내부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선수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선수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체결 후 본 계약기간 동안 타 회사로 이적해서는 아니 된다.
 2. 선수는 본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승인 없이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 등 제 3자를 통하여 타 회사와 접촉하여 본 게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논의해서는 아니 된다.
 3.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및 부대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는 질병 또는 부상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대외참가활동 및 훈련활동을 참가하지 않거나 부대활동의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4. 선수는 대회참가활동 및 훈련활동 외 상근의 다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근 직무의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회참가활동수행 및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5. 선수는 세계반도핑기구 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약물을 복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선수는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한국 e 스포츠협회, 회사, 종목사, 또는 본 게임 관련 회사 및 그 관계자를 비방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선수는 승부조작이나 불법 e 스포츠 도박과 관련한 행위, 경기의 공정성

을 훼손하는 부정행위,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선수는 참가하는 대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선수는 대회참가활동 기간 중 선수의 개인적인 사유로 라디오, 텔레비전, 대중매체, 마스크 등 출연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등 경기활동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회참가활동 기간을 제외한 때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선수는 광고 출연 등에 관련하여 회사의 사전 동의를 득하기로 하고,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하며, 선수와 회사가 협의하여 [별지]에서 정한 회사 또는 후원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광고 출연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11. 선수는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콘텐츠 제작 활동 및 기타 활동이 회사의 매출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e스포츠의 산업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며, e스포츠 구성원들의 수익 구조 다변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각종 부대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2. 선수는 본 계약서 및 [별지]에 기재된 선수의 의무, 팀 및 회사가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징계에 관한 회사 내부 규정 (팀 내부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팀 내부 규정) 은 징계 사유별 징계 수위, 징계 절차 및 징계의 공개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선수 및 관련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징계 수위는 징계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만약 징계에 관한 회사 내부 규정 (팀 내부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팀 내부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선수 및 관련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공표권]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에 대한 홍보 및 선수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는 회사가 발표권을 가지며 발표를 주관한다.

제19조 [초상권 및 저작권]

① 회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아래의 광고,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해 선수의 초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줄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가진다.

1. 전파매체(TV, 라디오, 인터넷, 기타매체의 광고/홍보물제작)
 2. 회사 및 후원사의 사업영역에 있는 콘텐츠 제작 활동
 3. 사회봉사 활동 및 기타 공익 협찬 활동
 4. 초상권 및 캐릭터 등을 활용한 프로모션활동 및 영업현장의 POP 제작
 5. 회사의 행사 등 프로모션 활동
 6. 기타 회사 및 후원사의 광고 및 홍보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활동
- ② 선수가 직접 또는 제 3자와 함께 본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회사의 기획 하에 제작·개발한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회사와 선수는 본 계약서 [별지] 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기간 동안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본조에 따른 회사의 활동 및/또는 콘텐츠로 회사가 얻는 수익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금은 본조에 따른 회사의 활동 및/또는 콘텐츠 제작 등에 선수가 협력하는 대가가 고려되어 있음에 선수는 동의한다. 다만, 특정 활동을 통해 회사가 얻을 수익의 배분에 관하여 회사와 선수는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 ④ 제 1 항에 따른 선수의 초상권의 이용권한은 본 계약기간 동안 회사에 있고,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멸하며 본 계약기간 종료 이후 회사는 선수의 초상권을 활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유·무형의 콘텐츠 및 상품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제작·생산할 수 없다. 단, 계약기간의 종료 당시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 등 저작물에 한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초상권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 없이 제작 완료된 그대로 영구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및 이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본조에 따른 선수의 부대활동이 선수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선수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수와 협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표 표현권]

- ① 회사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선수에 대하여 상표 표현권을 가진다. 선수는 다음과 같은 장소와 환경에서는 동 상호 및 상표, 로고 등의 노출에 최선의 노력

을 하여 회사의 상표 표현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식·비공식 경기 출전
 2. 국내 또는 국외 TV 출연 및 인터뷰(경기 전후) 시
 3. 국내 또는 국외 언론 인터뷰 시
 4. 기타 상표표현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선수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 ② 회사의 상표표현권 행사에 대하여 선수는 성실히 임해야 하며, 기타 부착물(악세서리 및 두발을 포함함)로 회사의 상표 노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선수는 사전협의 없이 타사 로고 및 이에 준하는 표시물이 있는 의류를 제1항에 반하여 착용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후원이 필요할 시 회사와의 사전협의 하에 착용할 수 있다.

제21조 [모범행위]

- ① 선수는 근면성실하게 대회참가활동에 참여하고, 선수로서 최선의 건강을 유지할 것을 서약한다. 선수는 본 게임 규약 및 회사의 제규칙을 준수하며, 리그에 참가할 때 매 순간 페어플레이를 하고 스포츠맨십을 유지하는 등 프로선수로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선수는 모든 도박,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수는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모범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와 선수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각자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제22조 [이해관계]

선수는 본 게임 규약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게임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본 계약기간 동안 이를 갖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제23조 [경기참가활동제한]

선수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기간 동안 회사 이외의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도 본 게임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제24조 [타종목 e스포츠의 참가 제한]

선수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게임 이외의 다른 e스포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e스포츠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제25조 [선수의 이적]

회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게임 규약에 따라 선수를 다른 회사에 이적시킬 수 있다. 다만, 선수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의 소속으로 이적시키거나 하는 경우에는 선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적시점을 기준으로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또는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적을 불문하고, 회사는 선수의 법정대리인과의 사전에 협의하고 이적에 대한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선수가 다른 회사의 소속으로 이적하는 경우, 본 계약상 선수에 대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 및 회사의 지위는 다른 회사에 이전된다.

제26조 [회사의 지위 양도]

선수는 회사가 팀을 매각하거나,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회사에게 본 계약상 회사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이 경우 본 계약상 선수에 대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 및 회사의 지위는 다른 회사에 이전된다. 다만 회사는 이 경우 선수에게 권리 양도의 필요성 및 제반 계약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 [불이익변경 금지]

선수의 이적이나 회사의 지위 양도로 인하여 본 계약의 회사측 당사자가 변경되었을 때 본 계약에 규정된 후원금 및 본 계약에 따른 기타 보수·대가 수익에 관한 선수의 권리는 지위의 양도로 인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본 규정은 본 계약이 양도된 후 선수와 본 계약 양수회사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본 계약상 조건보다 선수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28조 [합류]

본 계약에 따라 선수가 다른 회사로 이적하거나 회사의 지위가 다른 회사로 양도되는 경우, 선수는 소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수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무소 혹은 숙소로 합류하여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또는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선수가 소정일까지 합류하지 못했을 경우 양수회사는 지체된 1일당 본 계약상 후원금의 36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후원금 지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선수의 귀책사유 없이 합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선수에 의한 계약 해지]

- ① 선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에 의한 후원금, 기타 지불이 약정일로부터 30 일을 경과해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2.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거래정지를 당하거나 해산·청산·파산 및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법령상 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사가 팀을 해체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다만, 본 계약에 따라 회사의 지위가 다른 회사로 양도되는 경우는 제외함)
 4. 회사가 도박, 승부조작 등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선수에게 강요하는 경우
 5.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게임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로스터에 등록되었으나 이후 선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로스터에서 제외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한 경우. 명확히 하면, 제 11 조 본문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로스터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위 1년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본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4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선수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후원금 등을 선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③ 회사와 선수는 [별지] 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선수의 계약해지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제30조 [회사에 의한 계약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선수에 대하여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선수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선수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선수가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회사는 즉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통지의 도달일 이후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후원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1. 선수가 회사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선수가 회사 및/또는 팀의 내부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수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수로서 충분한 기술 능력 및 노력을 발휘하지 아니한 경우
 4. 선수가 사회적 물의(사기,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발생시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5. 선수가 부상 및 개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선수가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또는 부대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수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상은 제외함)
- ②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선수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선수는 회사로부터 해지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기 지급된 후원금의 2 배를 “회사”에게 배상해야 하며, “회사”는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후원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1. 선수가 본 계약에 규정된 도박·승부조작·약물복용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선수가 대리게임을 공급, 위탁하거나 이를 통한 거래 행위로 부정적인 행위를 통해 본 게임 규약을 위반한 경우
- ③ 회사와 선수는 [별지] 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회사의 계약해지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제31조 [계약해지의 효과]

선수 혹은 회사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선수는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부대활동의 참여 등을 포함한 본 계약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면하고, 회사는 선수에 대한 후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본 계약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면한다. 다만, 선수 혹은 회사에 의한 본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2조 [손해배상]

- ① 본 계약을 불이행 또는 위반한 귀책당사자는 민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감염병,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명령·조치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33조 [비밀유지의무]

- ① 선수와 회사는 본 계약서 [별지]에서 정하는 특약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작전과 훈련에 관련된 비밀, 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외부에 알려질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언론 인터뷰, 개인방송, SNS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3자(본 조에 한하여 한국 e스포츠협회, 종목사, 선수의 계약상 대리인 및 법정대리인을 제외함)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에서 정하는 후원금의 10% 또는 [별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따른 금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더라도 효력이 있다.

제34조 [완전계약조항]

본 계약 이전에 회사와 선수 사이에 체결된 서면 혹은 구두 계약은 본 계약 (본 계약 말미에 첨부한 [별지]의 특약사항을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 완전하게 대체되며, 본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회사와 선수 사이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 선수와 회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본 계약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선수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준거법 및 계약의 해석]

- ①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 게임 규약 및 관례에 따라 협의한다.

제36조 [분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선수는 본 게임 규약에서 규정하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야 한다. 위 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적이 인정되는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 [특약사항]

선수와 회사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에서 본 계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약사항은 본 계약 본문의 내용보다 선수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본 계약 본문의 내용보다 선수에게 불리한 내용을 특약 사항으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다. 다만, 본 계약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본 계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와 선수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 본문의 내용을 선수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8조 [선수의 보호]

- ① 본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선수는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②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본 계약의 체결에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제3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종목사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와 선수는 위 합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이하는 서명란을 위한 여백임)

회사

회사명 [REDACTED]

주소 [REDACTED]

대표자 성명 [REDACTED]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에 서명함

서명/인 _____

선수

성명 [REDACTED]

주소 [REDACTED]

생년월일 [REDACTED]

본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본 계약서에 서명함

서명/인 _____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REDACTED]
주소 [REDACTED]
생년월일 [REDACTED]
선수 본인과의 관계 [REDACTED]

본인은 미성년자인 선수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선수가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함

서명/인 _____

[별지]

별지의 내용은 본 계약의 본문과 합하여 하나의 계약을 구성합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본문보다 선수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 본문의 내용을 별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본문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본문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권리와 의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문구는 예시 문구이며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부터 []까지로 한다.

2. 후원금

본 계약의 후원금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총금액 []

지급일 []

지급계좌 []

기타 옵션 []

3. 참가배분비율

본 계약에 따른 상금의 배분 비율(회사:선수단)은 []으로 한다.

4. 기타 특약사항